



## 선박안전법령 개정 주요내용

### ●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확대

- 모든 선박(군함 및 경찰용 선박,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제외)
- 외국선박 중 국내 내항운송사업 여객선 및 화물선
  - 국적취득부나용선(BBC HP)은 2010. 11. 3까지 이 법을 적용함
- 수상레저선박 중 모터보트(20마력이상 선외기 제외), 요트, 호버크래프트
- 부유식 해상구조물(이동식시추선, 수상호텔 · 수상식당 · 수상공연장 등)

### ●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선박

- 계선 선박
- 현존선(2007. 11. 4.전에 건조된 선박) ☞ 신조선은 법 적용대상임
  - 평수구역 운항 부선(여객운송부선, 압항부선, 기름 · 위험물 등 산적운송부선 제외)
  - 연해구역 운항 부선(여객 · 화물 운송부선 제외)
  - 내수면어업 어선 중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
    - ※ 법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은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함

### ● 건조검사 대상 확대

- 대상선박 :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모든 선박
- 검사대상 : 선체, 기관, 배수 · 조타 · 계선 · 양묘 · 전기설비, 만재흡수선
  - ※ 종전 “제조검사”를 “건조검사”로 용어 변경

### ● 별도건조검사 신설

- 대상선박 : 수입되는 선박 등 건조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
- 검사방법 : 선체 상가 후 두께측정 및 압력시험, 기관개방 및 축계 발출 등

### ● 도면 승인 대상 확대

- 건조 ·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모든 선박은 해당 도면에 대하여 사전 승인
  -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해야 하며,
  - 선박소유자는 승인 도면을 선박에 비치토록 의무화
- 도면 승인 제외대상
  -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
  - 대항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 받으려는 선박의 기준도면 등

### ● 선체 두께측정의 법제화

- 대상 : 선령 10년 이상 강선 중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m 이상 선박
- 방법 :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 시 측정
- 두께측정자 : 선박안전기술공단, 한국선급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두께측정대행업체

# 검사 법령 제·개정

Best KST • 바다, 배 그리고 사람의 안전



- **만재흘수선 표시 대상 범위 확대(선박 길이 24m 이상 → 12m 이상)**
  - 표시 대상선박
    - 국제항해 선박
    - 선박길이 12m 이상 선박
    - 선박길이 12m 미만 선박 중 여객선 및 위험물산적 운송선
  - 표시 제외선박 : 잠수선, 수중익선, 비 국제항해(24m 미만) 예인 · 해양사고구조 · 준설 · 측량선 등
- **복원성 유지 대상 범위 확대(선박 길이 24m 이상 → 12m 이상)**
  - 대상 선박 : 여객선 및 선박길이 12m 이상 선박
  - 제외 선박
    - 비 국제항해(24m 미만) 예인 · 해양사고구조 · 준설 · 측량선 부선
    - 호수 · 하천 · 항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(여객선 · 카훼리선 제외) 등
- **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실시**
  - 대상선박 : 유조선, 산적화물선, 위험물산적운송선(액화가스산적운송선 제외)
  - 제외선박 : 국내항해 선령 5년 미만 및 300톤 미만 선박
  - 검사방법 : 선체외판 등 구조부재 두께 측정, 이중저탱크의 도장상태 및 압력시험
- **예인선항해검사 신설**
  - 검사 방법 등
    - 예인선이 부선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춘 예인설비 등
      - ※ 제외선박 :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
    - 검사시기 : 1년마다(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)
- **외국의 항만국통제**
  -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않도록 국제협약 준수(출항정지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)
  -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다음 선박의 특별점검 실시
    - 선령 15년 이상 산적화물선 · 위험물위반선
    - 최근 3년 이내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된 선박 등
- **추가적용선박의 시행 시기**
  - 신조선 : 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 선박부터 적용
    - 추가적용선박 : 2톤 미만의 선박,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, 5톤 미만의 범선, 부유식 해상구조물
  - 현존선(2008. 10. 1 이전 건조된 추가적용선박)
    - 길이 7미터 이상 : 2009년 4월 1일
    -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: 2010년 4월 1일
    - 길이 6미터 미만 : 2011년 4월 1일
    - ※ 현존선은 건조검사 및 도면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함